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2023년 11월 1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2 호

## 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(특별휴가)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안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90-760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특별휴가)	제32조(특별휴가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신설)	⑤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
	는 직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
	있다.

## 참고사항

□ 「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

## 제26조(특별휴가)

③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근로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